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5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이종성·성일종·박덕흠

김영식 • 권성동 • 이종배

김용판 · 김예지 · 김성원

유경준 • 유의동 • 서정숙

의원(12인)

제안이유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59 만명이 알코올 남용·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9조 4,52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와 같이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자동차 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종 범죄 등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 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며,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 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 8조의2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의3신설).
- 다.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1조의2제1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3.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 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 내용의 변경·금지 명령이나 광고 금지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 중 "규정에"를 "규정을"로,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광고 내용의 변경·금지 명령이나 광고 금지 명령"으로 한다.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자 제34조제3항 중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재 정 안 제8조의2(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 을 남용・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 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신 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 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제8조의3(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 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 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31條의2(罰則) 다음 각 호의 어 第31條의2(罰則)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3. (생략)

5. ~ 6. (생략)

第32條(罰則) 제7조제1항의 <u>규정</u> <u>에</u>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u>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u> <u>명령</u>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광고 내용의 변
경·금지 명령이나 광고 금지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u>자</u>
<u>2.</u>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第32條(罰則) <u>규</u>
<u>정을</u>
<u>같은 조 제2항제2호 또</u>
는 제3호에 따른 광고 내용의
변경・금지 명령이나 광고 금
지 명령
·.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과태료) ①

1.·1의2. (생 략) <신 설>

1의3. (생략)

2. ~ 4. (생략)

- ② (생략)
-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금주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자

<u>1의4.</u>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한 한 한 사람)